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234호

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정정 고시

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95호(2026. 3. 25.)로 고시한 “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
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” 내용 중 지형도면 상 오기사항이 있어 「토지이용
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
니다.
2. 관계도서(토지이음 “<http://www.eum.go.kr>”에서 열람 가능)는 부산광역시 도시정
비과(☎ 051-888-4244) 및 금정구 건축과(☎ 051-519-4614)에 비치하여 일반인
에게 보입니다.

2026년 7월 8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정정사유

-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95호(2026. 3. 25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
정 고시한 사항 중 지형도면 상 면적 오기를 정정하기 위함

2. 정정내용 : 지형도면 정정

- 정비기반시설 면적 정정
- 지형도면 중 ‘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(변경)’ 상 정비기반시설
면적 정정

정정 전	정비기반시설(도로)		정정 후	정비기반시설(도로)	
	기정	변경		기정	변경
	A=837.0㎡	A=837.1㎡		A=171.0㎡	A=171.4㎡

3. 그외 사항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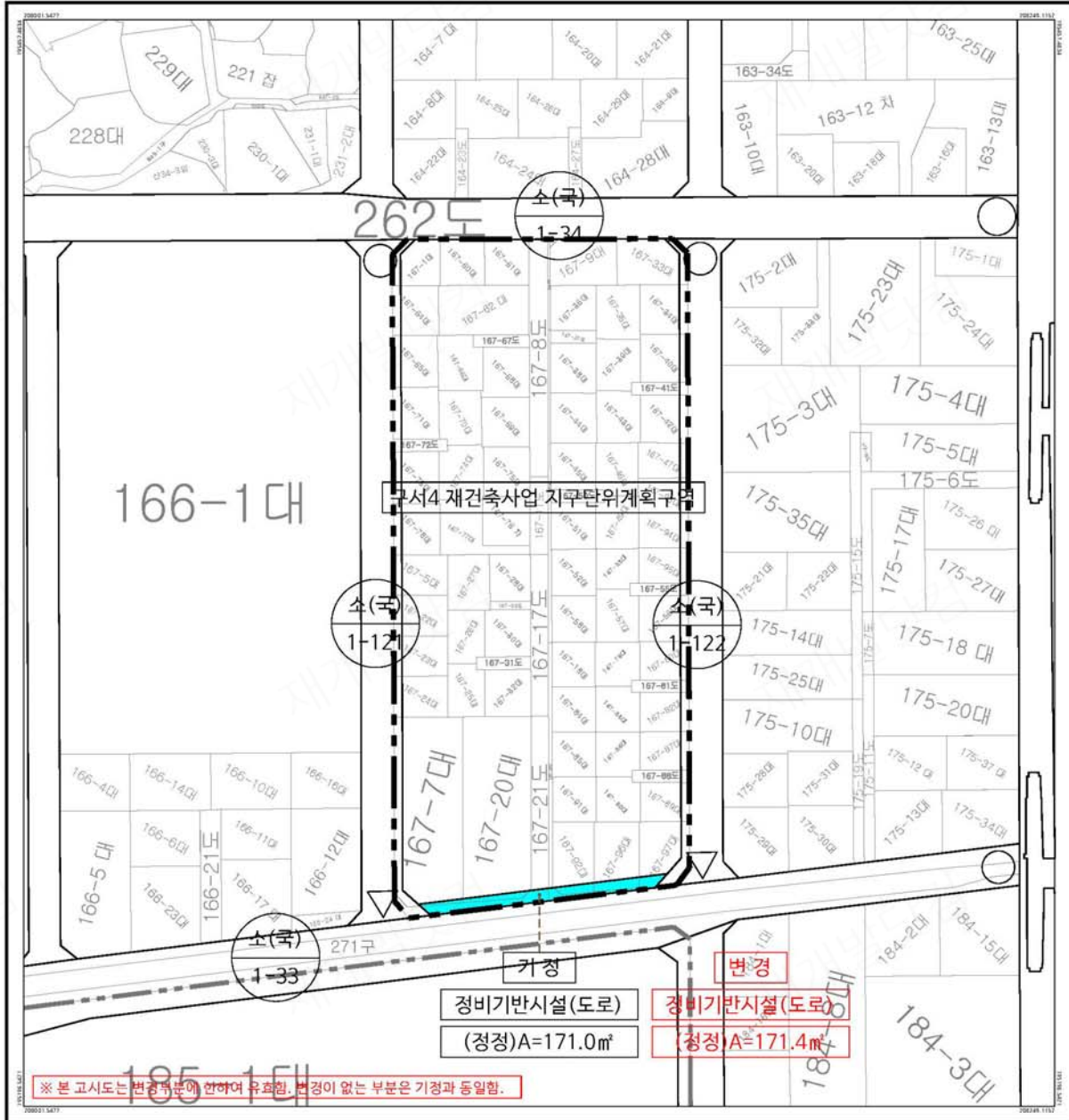
- 금회 정정고시 내용인 ‘2. 정정내용’ 이외의 부분은 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6-95호(2026. 3. 25.)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” 내용과 같음

4. 관계도면 : 생략(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, 금정구 건축과 비치)

- 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구서4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지정 지형도면 정정고시도
-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(변경) -

01



범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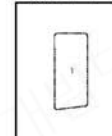
	지구단위계획구역
	주변 정비구역
	정비기반시설(도로)
	인출선
	지적선

축척 = 1:500



1.구서동

행정구역도



인접도엽

01

지정권자	부산광역시청	제정일자	7월 8일
고시번호	2026년	고시번호	제2026-234호
작성일자	김강훈	작성년월일	2026. 07. 08
지적권소유 및 발행자	부산광역시 금정구청		

구분	입안권자			결정권자	
	작성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속	금정구(건축과)	금정구(건축과)	금정구(건축과)	부산광역시(도시정비과)	부산광역시(도시정비과)
직위	-	재개발팀장	건축과장	-	재건축팀장
직명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주사	지방시설사무원	지방시설주사보	지방시설사무원
성명	김강훈	임동건	박근희	박경태	설문경
확인인					